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58

발의연월일 : 2021. 6. 17.

발 의 자:이병훈·서영교·한준호

송갑석 • 전재수 • 임오경

노웅래 • 민형배 • 김철민

유정주 · 오영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던 5층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정차해있던 버스의 승객 등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후 이루어진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또한 안전사고 방 지를 위한 잭서포트(건축물지지대)도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음.

한편,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감리자의 부실감리 또한 이번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 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 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② (생 략)	② (생 략)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는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u>상</u> 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
	<u>하여야 한다.</u>
<u>③</u> ~ <u>⑤</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